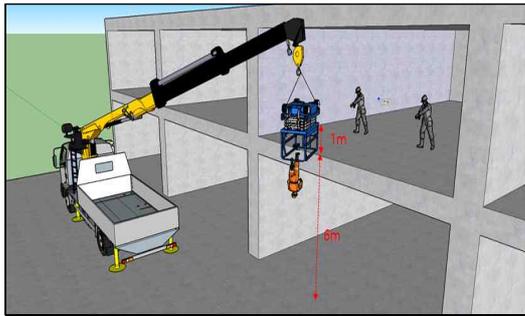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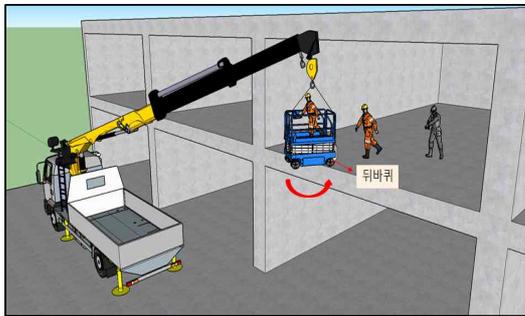


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으로 고소작업대 양중작업 중 떨어짐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 사 명 | 진주혁신도시 C-4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| 발생일시 | 2019.05.09.(목) 08:45경 |
| 재해형태 | 떨어짐 | 재해정도 | 사망1명 |
| 소 재 지 | 진주시 충무공동 205 | 공사규모 | 지하4층 지상 34층(5개동) |
| 재해개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.05.09.(목) 08:45경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○○토건(주)가 시공하는 진주혁신도시 C-4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○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(덕트공.남.54세)가 405동 상가 2층 덕트 설치 작업을 위해 ○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으로 고소작업대 양중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뒤집어지면서 7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. | | |

재 해 상 황 도



| | |
|-------------|--|
| 안전대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업계획서의 작성·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양중, 운반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하여야 함. ○ 탑승의 제한조치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매달린 하물에 탑승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야 함. ○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함. |
|-------------|--|